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¹⁾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규모	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개소 당 최대 3억 원	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 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지정연도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
			1차 연도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노인친화 기업·기관	최대 2억원	지정연도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최대 1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
			1차 연도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 교부방식

- (분할교부) 3년간 교부(지정연도, 1차·2차 연도)
- (교부시점)
 - 지정연도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보조금 지원 총액 (분할교부 총액)으로 가입) 제출 후 보조금 교부
 - 1차·2차 연도는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인원(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에 따라 교부
 - ※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 ※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해부터 발생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III. 지원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신청 가능
 -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전년도 12월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단, 일용직은 제외). 관련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근로자] 전년도 12월의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관련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신규 노인고용 의무

○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된 해(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함

※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 대응투자

○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

< 대응투자 인정 기준 >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무상제공 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
 -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 공모참여 제한

-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조치(최근 6개월 이내 경영 상 해고·권고사직 등)를 취한 경우, 공모 참여 제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비, 청소 등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 단,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에서 인력 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경우 신청 가능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포기 한 기업의 경우, 해당기업 및 대표자는 자진 포기일 기준으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에 지원 불가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한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지원) 신청 불가

III.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지원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서식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관련 증빙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관리인력 인건비 산정 시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 내 책정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부동산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5. 2. 14.(금) ~ 6. 30.(월),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1차 접수] 2. 14.(금) ~ 3. 31.(월), [2차 접수] 4. 1.(화) ~ 6. 30.(월)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 이메일·택배 제출 불가)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USB 제출
 ※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 접수 불가, 우편제출 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유효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권역	제출처	연락처	대표전화번호*	담당자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송레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1 02-6329-6922	1833-7128	경영 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거제1동 46-4) 주성산빌딩 3층	070-4372-3061 070-4372-3066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070-7875-2477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송레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3 02-6329-6924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700-5) SRB빌딩 6층	062-714-1293 062-525-5782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42-719-1380 042-719-1387		

* 대표전화번호 이용 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연결

IV. 심사절차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심사시기) 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
- (심사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 (노인 채용기업) 필요 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업(기관) 개별 통보

○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대면, 기업제출 사업계획 내용 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 2차 심사는 신청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 시간은 10분~15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제안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70점 미만 탈락)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선정방법)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누리집(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및 기업(기관) 개별 통보

V.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의 노인 채용기업은 노인일자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함
- 본 공고문의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함
- 본 공고문의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이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서의 명칭은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로 문의

<참고 1> 공모추진 세부 일정

<참고 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참고 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 4> 심사기준 및 지표 안내

<참고 5> 노인친화기업·기관 예산편성 기준

<참고 6> 공모 1차 심사 결과표

<참고 7> 공모 1차 심사 검토의견서

<참고 8> 2차 심사(중앙심의위원회) 심사평가표

참고1

공모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p align="center"><1분기> 접수 및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공모신청 	<p align="center">'25. 2. 14.(금) ~ 3. 3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심사 	<p align="center">'25. 2. 14.(금) ~ 3. 3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 	<p align="center">'25. 4. 7.(월) ~ 4. 11.(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최종선정) 심사 	<p align="center">'25. 4. 21.(월) ~ 4. 25.(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선정 통보 	<p align="center">~ '25. 5. 2.(금)</p>
<p align="center"><2분기> 접수 및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공모신청 접수 	<p align="center">'25. 4. 1.(화) ~ 6. 3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심사 	<p align="center">'25. 4. 1.(화) ~ 6. 3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 	<p align="center">'25. 7. 7.(월) ~ 7. 1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최종선정) 심사 	<p align="center">'25. 7. 28.(월) ~ 8. 1.(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선정 통보 	<p align="center">~ '25. 8. 8.(금)</p>

※ 추진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
-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

구분	내용
신체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 ◦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
보조기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
사고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 경고표시판 설치 ◦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고용인원 산정 방법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 ▶ 근무개월 수 미 충족 퇴사자의 경우, 총원 인력의 근무월수와 합산하여 충족 시 실적 인정함 (예시: 60세 이상 근로자 A 4개월 근무 + 총원된 60세 이상 근로자 B 3개월 근무 ⇒ 고용인원 1명 인정)
- ▶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전에 고용되어 있던 60세 이하 직원이 선정 공고일(보건복지부 발표일) 이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① 근로계약 체결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② 공모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내 근로자
 - ③ 고용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방식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별 이행계약서에 따라 연차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 목표 인원 달성 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 (지급대상) 이행계약서 상 당해연도 연차별 보조금 교부 대상기업
- ▶ (지급방식) 3년간 교부
 - (지정 연도)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100%(최대 2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개선)비용(최대 1억원)
 - (1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 (지급자격) 신청 대상 기업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대응투자금 이행 완료(해당 시)
 -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
 -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필수)

참고4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중앙심의위원회(선정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 내용, 수행 능력(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 사업화능력 평가), 사업 계획, 사업 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 (1차 심사)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구분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1차 심사	수행능력 (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건전성(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12.5), 유동비율(12.5), 매출액 증가율(12.5), 매출액 영업이익률(12.5), 기업신용평가등급(10) 사업화 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10),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수행능력 (비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능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25), 운용 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2차 심사	사업내용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내용 적합성,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사업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투자 적합성 : $\text{대응 투자금} / \text{신청 보조금} *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채용기업) 신설법인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3점								

□ 선정 기준

- (1차 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최종 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

- 1차 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 영리기업용	기업 건정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용평가등급 *주1 ※ 평가기준: (10점) A- 이상, (9.8점) BBB+, (9.6점) BBB0, (9.4점) BBB-, (9.2점) BB+, BB0, (9.0점) BB-, (8.8점) B+, B0, B-, (7.0점) CCC+ 이하 	10점	
	사업화 능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합 계			100점
	수행능력평가 ※ 비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합 계			100점	

○ 최종(2차)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사업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사업효과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1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창업 여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채용기업)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합 계		100점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가점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 지정 후 3년 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노인 채용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해당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주1)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사업 공고 당시(신청서류 접수일 포함) 평가된 내용으로 한다.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득점을 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의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로 평가한다.

□ 노인 채용기업

[노인 채용기업 예산항목]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 총액의 30% 이내 편성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 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 취득비	-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취득은 지양하며, 리스 계약으로 임차비로 편성 가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에 추진
	임차비	-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용 불가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 재료비는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가능,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
	교육 훈련비	- 60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비용 ※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홍보 활동비	- 신문, 방송, 누리집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에 한함
관리 운영비 ※ 예산 총액의 10% 이내 편성	복리후생비	-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비, 백신 등 접종비용
	여비(국내)	-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 시 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예산별로 비목별 비중을 준수하여야 함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예산항목]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 총액의 30% 이내 편성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 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의 시설투자비 및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 취득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취득비용(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취득은 지양하며, 리스 계약으로 임차비로 편성 가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에 추진
	임차비	- 60세 이상 근로자 작업 및 편의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관리금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용 불가
	교육 훈련비	- 60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 ※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홍보 활동비	- 신문, 방송, 누리집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에 한함
관리 운영비 ※ 예산 총액의 10% 이내 편성	복리후생비	-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비, 백신 등 접종비용
	여비(국내)	-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 시 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예산별로 비목별 비중을 준수하여야 함

2025년 공모 1차 심사 결과표(비영리기업용)

소 속		평가대상	
제출일자	년 월 일	담당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배점구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사업화 능력평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 가능 외부 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 부서·전담 인력 보유 및 배정 여부)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운영인력 전문성 (운영 인력의 해당 분야 국가 및 관련 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술성 보유 (보유 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 재산권 확보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합 계 (100점 만점)				() 점				

1차 심사 검토의견서

가. 신청 개요

접 수 번 호		2025-서울-001					
신청 기업 (기관)	신 청 유 형	<input type="checkbox"/> 노인 채용기업		<input type="checkbox"/> 노인친화기업·기관			
	법 인 명			법 인 대 표			
	신청기업 (기관)명			기관대표자			
	대응투자 기업(기관)명			기업(기관)대표			
	전 화			FAX			
	E - mail	가급적 기업 메일주소 작성		설 립 일 자			
	주 소	(우: -)					
	홈 페이지						
사업 개요	사업요약	10글자 이내로 사업내용 요약 작성, 신청기업(기관) 제출자료 참조		업 종			
	예산 및 참여인원 (천원, 명)	총사업액	금	원 (₩)		
		보조금 신청금액	금	원 (₩)		
		대응투자 (천원)	구 분				
							'25년
							'26년
		간접투자	소 계				'27년
			현 금				
			현 물				
		보조금 세부내역 (천원)	인건비	사업비 구성(보조금)			관리 운영비
		시설 투자비	자산 취득비	임차비	기타		
고용인원	○ 지정연도 이후 관리기간(5년) 내 고용 창출 성과 목표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60세 이상 고용 창출 목표				2030년		

나. 기업 및 단체 현황

구분	세부 내역	검토 내용(예시)
기업 및 단체 현황	신청 기관(기업) 법인 유무	■
	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	■ 신청유형: ■ 대응투자금액: (보조금 대비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 해당 여부	■
	신청법인의 결격사유 여부	■
	최소 고용인원 목표, 보조금 신청 금액 적정성	■업종: ■고용목표: 으로 최소 고용인원 목표 준수 ■보조금 신청금액: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법인 재무제표(기업의 경우)	■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컨소시엄의 경우)	■
	관리인력 인건비 증빙자료(해당 시)	■
	(노인 채용기업) 사업장 설립형태 증빙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 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	

다. 평가 참고 의견

구분	평 가 지 표	검토 내용(예시)
사업 내용	<p>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기술, 00특허, 판매채널, 00파트너십, 00 제휴, 자체 브랜드 등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업 내외부의 핵심 자원이 존재 ■ A사의 대응투자로 안정적인 설비확보 및 판매채널 확보가 가능해 보이며 원재료의 구매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약 1주 안에 상품화 및 배송)효율적 기업활동 및 제시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
	<p>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스키장비 등 단순물품을 보관(입출고 업무) 및 관리하는(오염,구김방지)업무로 업무 난이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직무교육 또한 자체 시스템을(D사연계)통해 운영 예정
	<p>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업계와 달리 디자인, 생산과정, 유통 과정을 기업내부로 수직 통합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추어 생산과 납품 지연, 품질불량과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체브랜드를 통한 직영매장 판매로 수익을 창출.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빠른 의사결정과 시간단축을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임
사업 계획	<p>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00업체가 공구를 구매하는 목적은 장비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착안, 00분야를 주요시장으로 범용화된 공구를 “장기임대 및 유지보수 ”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제시 ■ A협회, B기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장조사 과정을 거쳐 결과의 신뢰도 높음
	<p>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 타당성, 수익 실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원가의 구조와 마진폭,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재고, 납기, 자산 회전 등의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현장에 공구 대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연간 00억 추정), 또한 임대 장비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연간 00억 추정) 수익구조로 관련 매출과 예상 손익 계산이 타당해 보임 - 상품 재고관리는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으로 (00업체가 온라인으로 임대장비를 확인)이루어

구분	평 가 지 표	검토 내용(예시)
		<p>지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다시 공구 관리서비스 및 장비구매 등 예산집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어짐</p> <p>■ 매출예상치가 현실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손익계산의 추정치가 비현실적</p>
사업 효과	<p>고용창출 효과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p>	<p>■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의류, 스키장비 등 보관관리)’를 제공하는 B사의 사업모델은 회원들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파트에서 다수의 고용 창출(월평균 00명)이 이루어지며</p> <p>- 사업 확장 단계에서 회원을 상대로 픽업 서비스를(회수 및 배달)제공, 추가적인 고용창출(월평균 00명)과 부가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p>
	<p>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 사업, 파급 효과 등)</p>	<p>■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00제품을 몇가지 제도나 혜택을(재구매)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제품유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을 통해 주력사업과 부가 사업 모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임</p>
	<p>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 해결, 고령자 인식 개선 및 커뮤니티 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p>	<p>■ 지역사회 빈민계층에 000를 제공하고 회수된 구형000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C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보임</p>
대응 투자	<p>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예산신청액 대비 분담률, 자금유입 경로 등)</p>	<p>■ 대응투자 내역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대응투자 : - 현물 대응투자 :
신용 정보	<p>신청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p> <p>가. 채무불이행 이력</p> <p>나. 소송정보 (소송계류 상태)</p> <p>다. 법정관리/화의 이력</p> <p>라. 당좌거래정지 이력</p> <p>※ 해당내역이 있을 경우 상세 기술</p>	

라. 최종 검토의견

1. 서류 확인사항

-
-

2. 현장실사 확인사항

-
-

※ 서류 및 현장실사 필수 확인사항

- 제출 서류의 서식 및 요건 충족여부 / 기관의 신청자격 및 사업이력
- 총괄담당자 및 기관장(대표이사)면담 / 사업관련 제안된 부지, 시설 등의 확인(필요시)
- 시장조사 진행여부 및 관련내용(거래선, 수익실현 방법 등) 확인
- 권소사업 또는 대응투자 참여기관(기업)의 참여의사 및 사업실적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최종심사 평가표

소 속		평가대상	
평가일자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배점구간				점수
			A	B	C	D	
사업 내용 (30점)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10	8	6	4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10	8	6	4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10	8	6	4	
사업 계획 (30점)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15	12	9	6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15	12	9	6	
사업 효과 (25점)	고용창출 효과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10	8	6	4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 효과 등)	10점	10	8	6	4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5	4	3	2	
대응 투자 (15점)	대응투자 적합성	15점	15	12	9	6	
가점 (3점)	고령자 창업 여부	3점	해당 시 3점, 미해당 시 0점				
합 계			() 점				